

예비심사 안건

의안번호	제 2013- 호
의 결 연월일	2013. 10. . (제 회)

의 결  
사 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설규제 심사안

제 출 자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제출연월일	2013. 10. .

# 목 차

I. 규제 심사(안) 개요 .....	1
□ 요 약 .....	1
II. 규제심사안 .....	4
1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 .....	4

# I. 규제 심사(안) 개요

## □ 요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신설 규제내용
<p><b>1. 은누리상품권 발행 등</b></p>	<p>○ &lt;신설&gt;</p>	<p>&lt;제9조의2&gt; 은누리상품권의 종류 등</p> <p>○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을 종이상품권(5천원·1만원),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선불 전자지급수단(정액카드, 충전식)으로 함.</p> <p>⇒ (사유) 현재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등과 다르게 점포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대금 결제가 개별 점포별로 이루어지므로 종이상품권은 고객권 보다는 활용도가 높은 5천원·1만원권으로 하고, 전자상품권은 고객과 소액결제가 모두 가능한 5만원·10만원권 및 충전식 형태의 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자 함.</p> <p>&lt;제9조의3&gt; 등록 제한업종</p> <p>○ 은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과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중 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등 41개 업종</p>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신설 규제내용
		<p>으로 함</p> <p>⇒ (사유) 전통시장은 고객과 상인간 상품 및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제2조 전통시장의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통시장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시장등,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상인)으로 하고,</p> <p>이 중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토대로 도박·사치·향락 업종, 법에 따라 상인으로 간주하기 곤란한 업종 등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으로 규정</p> <p>* (가맹제외 업종) ①도박, 투기조장, ②사치, 향락 등 불건전, ③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는 업종 ④전통시장 상인으로 분류하기에 부적합한 업종(금융보험, 부동산, 학원, 법무회계, 병원 등)</p> <p>&lt;제9조의4&gt; 환급금액의 비율</p> <p>○ 상품권 사용 고객이 물품등을 구매한 후 환급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할 사용금액의 비율은 권면금액의 60%로 함</p>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신설 규제내용
		<p>⇒ (사유)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제10022호)에 따르면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 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의 경우도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잔액을 반환하도록 규정</p> <p>[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p> <p>○ 개별가맹점이 가맹점 준수 사항(법 제26조의5)을 위반한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이 이를 인지하고 환전요청에 응하거나 가맹상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환전 대행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가맹점 종류,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p> <p>⇒ (사유) 상품권 변칙유통(일명 “깡”)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가맹점(상인)이 준수사항인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환전하는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상인조직)이 이를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한 경우와 가맹 상</p>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신설 규제내용
		<p>인이 아닌 자와 결탁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p> <p>과태료 부과기준은 개별가맹점의 경우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1,000만원, 3회 위반 2,000만원으로 정하고,</p> <p>환전대행가맹점이 개별가맹점의 규정 위반을 인지하고 환전 대행한 경우는 개별가맹점과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가맹상인이 아닌 자를 위해 환전대행한 경우에는 도덕적 흠결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첫회 위반시 과태료 금액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하고, 2회 위반 1,500만원, 3회 위반 2,000만원으로 규정</p>

## II. 규제심사

### 1.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

#### I 규제 신설 내용

##### (도입배경)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되는 상품권으로 발행 및 유통(판매·회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임.
- 상품권 발행규모가 '09년 200억원에서 '12년 4,000억원으로 증가였음에도 사업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극히 미흡하여 사업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제화한 후 이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며
- 특히, 상품권의 대량발행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물품 등의 거래 없이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상품권 가맹점의 변칙유통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 \* 법률개정 전에는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상 발행근거(제26조)는 '상인들이 발행하는 공동상품권'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발행·판매·환전 및 가맹점 등록·취소 등 모든 업무는 수탁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 운영세칙에 따라 추진되어 왔음.
- 이에따라 법률을 개정하여 상품권의 명칭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상품권의 발행, 환전, 가맹점 등록, 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 '13.4.30 국회의결,  
'13.5.28 공포, '13.11.29 시행

- 법 개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 가맹 제한 업종, 상품권 사용후 환급해 줘야하는 금액의 비율, 과태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추진방안)

- 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시행령 등 하부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및 가맹점 관리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 특히, 상품권 대량발행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상품권 갭' 등 변칙유통 사례 방지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주요내용)

- ①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을 종이상품권(5천원·1만원),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정액카드, 충전식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함
- ②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과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중 주점업, 골

프장 운영업 등 41개 업종으로 함

- ③ 물품 등을 구매한 후 환급 요청에 응하여야할 사용금액의 비율을 권면금액의 60%로 함
- ④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법 제26조의5)을 위반한 개별 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가맹점 종류,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p>○ &lt;신 설&gt;</p>	<p>제9조의2(은누리상품권의 종류 등)</p> <p>①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은누리상품권의 종류는 종이상품권과 「전자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종이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 1만원으로 하고, 「전자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5만원, 10만원으로 한다.</p>
<p>○ &lt;신 설&gt;</p>	<p>제9조의3(등록 제한업종) ① 법 제2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제외한 업종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 중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p>
<p>○ &lt;신 설&gt;</p>	<p>제9조의4(환급금액의 비율)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은누리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p>

개 정 전	개 정 후																																																
○ <신 설>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등록 제한업종(제9조의3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표준산업분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가 맹 점 제 한 업 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6102 중</td> <td>담배 중개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6109 중</td> <td>골동품, 귀금속 중개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6209 중</td> <td>일담배 도매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6331</td> <td>주류 도매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6333</td> <td>담배 도매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6416 중</td> <td>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6463 중</td> <td>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 건전 오락기구 도매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6492 중</td> <td>귀금속 도매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6722 중</td> <td>귀금속광물 도매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7221 중</td> <td>주류 소매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7640 중</td> <td>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 건전 오락기구 소매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7859 중</td> <td>성인용품 판매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7911 중</td> <td>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 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 소매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7993 중</td> <td>다단계 방문판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621</td> <td>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주 점업(56219) 제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8122 중</td> <td>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 지 발행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821, 58219 중</td> <td>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3999 중</td> <td>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 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4</td> <td>금융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5</td> <td>보험 및 연금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6</td> <td>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8</td> <td>부동산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9390 중</td> <td>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td> </tr> </tbody> </table>	표준산업분류	가 맹 점 제 한 업 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일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 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중	귀금속 도매업	46722 중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 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 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 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주 점업(56219) 제외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 지 발행업	5821,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 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업	68	부동산업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
표준산업분류	가 맹 점 제 한 업 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일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 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중	귀금속 도매업																																																
46722 중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 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 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 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주 점업(56219) 제외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 지 발행업																																																
5821,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 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업																																																
68	부동산업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																																																

개 정 전	개 정 후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825 293 1038 353">표준산업분류</th> <th data-bbox="1038 293 1393 353">가 명 점 제 한 업 종</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25 353 1038 439">711, 712</td> <td data-bbox="1038 353 1393 439">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td> </tr> <tr> <td data-bbox="825 439 1038 488">71520</td> <td data-bbox="1038 439 1393 488">지주회사</td> </tr> <tr> <td data-bbox="825 488 1038 573">71531 중</td> <td data-bbox="1038 488 1393 573">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td> </tr> <tr> <td data-bbox="825 573 1038 622">731</td> <td data-bbox="1038 573 1393 622">수의업</td> </tr> <tr> <td data-bbox="825 622 1038 672">75330</td> <td data-bbox="1038 622 1393 672">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td> </tr> <tr> <td data-bbox="825 672 1038 721">75993</td> <td data-bbox="1038 672 1393 721">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td> </tr> <tr> <td data-bbox="825 721 1038 806">75999 중</td> <td data-bbox="1038 721 1393 806">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td> </tr> <tr> <td data-bbox="825 806 1038 855">85</td> <td data-bbox="1038 806 1393 855">교육서비스업</td> </tr> <tr> <td data-bbox="825 855 1038 904">86</td> <td data-bbox="1038 855 1393 904">보건업</td> </tr> <tr> <td data-bbox="825 904 1038 954">91113</td> <td data-bbox="1038 904 1393 954">경주장 운영업</td> </tr> <tr> <td data-bbox="825 954 1038 1003">91121</td> <td data-bbox="1038 954 1393 1003">골프장 운영업</td> </tr> <tr> <td data-bbox="825 1003 1038 1088">9122 중</td> <td data-bbox="1038 1003 1393 1088">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 실, 성인PC방, 전화방</td> </tr> <tr> <td data-bbox="825 1088 1038 1137">91221 중</td> <td data-bbox="1038 1088 1393 1137">성인용게임장 운영업</td> </tr> <tr> <td data-bbox="825 1137 1038 1223">91223</td> <td data-bbox="1038 1137 1393 1223">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td> </tr> <tr> <td data-bbox="825 1223 1038 1272">91249</td> <td data-bbox="1038 1223 1393 1272">기타 gambling 및 베팅업</td> </tr> <tr> <td data-bbox="825 1272 1038 1321">9612 중</td> <td data-bbox="1038 1272 1393 1321">증기탕 및 안마시술소</td> </tr> <tr> <td data-bbox="825 1321 1038 1370">96992</td> <td data-bbox="1038 1321 1393 1370">점술 및 유사서비스업</td> </tr> <tr> <td data-bbox="825 1370 1038 1420">96999 중</td> <td data-bbox="1038 1370 1393 1420">휴게텔, 키스방, 대화방</td> </tr> </tbody> </table> <p data-bbox="825 1420 1393 1581">* 생계형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표준산업분류	가 명 점 제 한 업 종	711, 712	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 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게임장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	91249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표준산업분류	가 명 점 제 한 업 종																																						
711, 712	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5	교육서비스업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 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게임장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																																						
91249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p data-bbox="220 1592 312 1630"><b>[별표]</b></p> <p data-bbox="300 1653 708 1691">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p> <p data-bbox="220 1738 363 1776">1. 일반기준</p> <p data-bbox="244 1787 794 1962">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p>	<p data-bbox="836 1592 963 1630"><b>[별표 2]</b></p> <p data-bbox="916 1653 1324 1691">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p> <p data-bbox="836 1738 979 1776">1. 일반기준</p> <p data-bbox="860 1787 1410 1962">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p>																																						

개 정 전			개 정 후		
<p>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li>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li>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 등록을 한 경우	법 제 74조제 1항제 1호		가.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법 제 74 조 제 1 항 제 1 호	
1) 1차 위반		100	가) 1차 위반		500
2) 2차 위반		300	나) 2차 위반		1,000
3) 3차 이상 위반		50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나.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 74조제 1항제 2 호		나. 제26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법 제 74 조 제 1 항 제 2 호	
1) 경과일수 10일 이내		10	1) 환전대행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하는 경우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20			

개 정 전		개 정 후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30	가) 1차 위반	500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50	나) 2차 위반	1,000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80	다) 3차 이상 위반	2,000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100	2) 환전대행가맹점이 개 별가맹점이 아닌 자 를 위하여 온누리살 품권 환전을 대행하 는 경우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200	가) 1차 위반	1,000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300	나) 2차 위반	1,500
다.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 74조제 1항제2 호	다) 3차 이상 위반	2,000
		다. 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한 경우	법 제 74 조 제 2 항 제1호
		1) 1차 위반	100
		2) 2차 위반	300
		3) 3차 이상 위반	500
		라.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법 제 74 조 제 2 항 제2호
		1) 경과일수 10일 이내	10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 일 이내	20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 일 이내	30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 일 이내	50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80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100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200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300
		마.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 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 고를 한 경우	법 제 74 조 제 2 항 제2호
			300

## 2. 규제영향분석서

### 1. 분석대상 규제개요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	강화		내용심사		존속기한연장	
		○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시장상권과</li> <li>소상공인정책국장 김형영, 시장상권과장 장대교(042-481-4559)</li> </ul>										
관련규제수 및 근거법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26조의5, 제74조</li> </ul>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온누리상품권 사용 고객 및 이를 수취·환전하는 시장등의 가맹 상인·상인조직			행정예고 (9.11~10.21)				없음		
	이해관계자	온누리상품권 사용 고객 및 상인·상인조직			행정예고 (9.11~10.21)				없음		
	관련 부처	해당없음			해당없음				없음		
규제존속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등 :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사용고객 및 시장등(등록·지정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가맹 상인·상인조직은 지속 존재하게 되므로 존속기간을 설정할 수 없음</li> </ul>										
신설 규제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을 종이상품권(5천원·1만원권)과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정액카드 5만원·10만원권, 충전식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로 함</li> <li>②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도·소매업, 용역업이 아닌 업종과 도·소매업, 용역업 중 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등 41개 업종으로 함.(41개 업종은 &lt;별표&gt;로 규정)</li> <li>③상품권 사용고객이 물품 등을 구매한 후 판매 상인이 환급</li> </ul> </li> </ul>										

	<p>요청에 응하여야할 사용금액의 비율은 권면금액의 60%로 함.</p> <p>④물품등의 제공없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판매한 물품등의 가격 이상의 은누리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한 가맹점에 대해 법에서 정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p>																								
규제체계도	<p>①은누리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상품권발행</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품권 판매</td> </tr> <tr> <td>중소기업청(업무위탁) → 시장 경영진흥원(발행)</td> <td></td> <td>시장경영진흥원(판매위탁) → 판매 금융기관 → 고객</td> </tr> </table> <p>② 은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가맹점 등록 여부 공문 통보</td> </tr> <tr> <td>시장등의 상인 및 상인조직 → 지방중소기업청</td> <td></td> <td>지방중소기업청 → 시장등의 신청 상인 및 상인조직</td> </tr> </table> <p>③상품권 사용고객이 물품 등을 구매한 후 환급 요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용고객의 환급요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사용잔액 환급</td> </tr> <tr> <td>시장등의 상인 → 고객</td> <td></td> <td>시장등의 상인 → 고객</td> </tr> </table> <p>④변칙유통 가맹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과태료 부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변칙유통행위 적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과태료 부과</td> </tr> <tr> <td>지방중소기업청</td> <td></td> <td>중소기업청장 → 가맹점인 상인 및 상인조직</td> </tr> </table>	상품권발행	▶	상품권 판매	중소기업청(업무위탁) → 시장 경영진흥원(발행)		시장경영진흥원(판매위탁) → 판매 금융기관 → 고객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	▶	가맹점 등록 여부 공문 통보	시장등의 상인 및 상인조직 →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 시장등의 신청 상인 및 상인조직	사용고객의 환급요청	▶	사용잔액 환급	시장등의 상인 → 고객		시장등의 상인 → 고객	변칙유통행위 적발	▶	과태료 부과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 가맹점인 상인 및 상인조직
상품권발행	▶	상품권 판매																							
중소기업청(업무위탁) → 시장 경영진흥원(발행)		시장경영진흥원(판매위탁) → 판매 금융기관 → 고객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	▶	가맹점 등록 여부 공문 통보																							
시장등의 상인 및 상인조직 →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 시장등의 신청 상인 및 상인조직																							
사용고객의 환급요청	▶	사용잔액 환급																							
시장등의 상인 → 고객		시장등의 상인 → 고객																							
변칙유통행위 적발	▶	과태료 부과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 가맹점인 상인 및 상인조직																							

##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 (1) 규제의 필요성

#### 1-1. 문제 정의

- 은누리상품권이 법률의 도입 취지 및 전통시장의 여건에 맞게 발행·판매 및 환전될 수 있는 근거와 변칙적인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조항 마련

- 은누리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 : 판매대금이 일괄 결제되는 대형

마트 등과 달리 전통시장은 점포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대금 결제가 개별 점포별로 이루어짐을 감안,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 권면 금액을 다르게 규정

-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 전통시장은 고객과 상인간 상품 및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제2조 전통시장의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통시장특별법 적용대상 지역(시장등,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 가맹 대상업종을 도·소매업, 용역업을 기본으로 하고, 도박·투기조장 우려가 있는 업종 등 부적합한 업종 41개 업종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으로 <별표 1>에 규정
- 상품권 사용고객이 물품 등을 구매한 후 환급 요청을 할 경우 판매 가맹점이 그 요청에 응하여야할 사용금액의 비율을 권면 금액의 60%이상으로 규정
- 법률에 규정한 과태료 최고금액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개별가맹점이 '물품 등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이 이를 인지하고 환전대행을 해 준 경우, 환정대행가맹점이 상인이 아닌 자와 결탁하여 환전을 대행한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규정

## 1-2. 규제 의 신설 필요성

### □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26조의5, 제74조에서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환급(사용잔액 반환)금액의 범위(사용금액 비율),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고객들과 이를 취급하는 전통 시장 상인들에게 상품권 활용·취급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 상품권을 사용하고 반환을 요청하거나 반환해 주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정하고
  - 전통시장 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는 업종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모든 소요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음을 감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번칙유통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임.

□ 해외 사례 : 없음

## (2)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2-1. 대안 검토

#### ① 온누리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

-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을 정함에 있어 대금을 일괄 결제하는 대형마트 등과 달리 전통시장은 점포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대금 결제가 개별 점포별로 이루어짐을 감안함.
- 발행액의 대부분(96%)를 차지하고 있는 종이상품권은 소액(5,000원권·1만원권)으로만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정액카드, 충전식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은 소액결제 및 고액결제가 모두 가능하도록 5만원권·10만원권과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도 발행 (규제대안 없음)

## ②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 전통시장은 고객과 상인간 상품 및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제2조 전통시장의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통시장 특별법 적용대상 지역(시장등,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 가맹 대상업종을 도·소매업, 용역업을 기본으로 하고,
-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지원 제한업종을 토대로 도박·투기조장 우려가 있는 업종, 사치·향락업종, 국민보건에 반하는 업종, 그 밖에 전통시장 상인이라고 보기에 부적합한 업종을 포준산업분류기준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41개 업종을 <별표 1>에 규정(규제대안 없음)

제한사유	제한업종
도박·투기조장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성인용품 도소매업, 경마·경륜·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바타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경주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사치·향락 등 불건전	골동품·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성인용품 판매점, 주점업(단, 생계형 기타 주점업 제외),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성인용게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단, 생계형은 제외), 중기탕 및 안마시술소, 휴게텔·키스방 대화방
反국민보건	담배중개업, 잎담배 소매업, 주류 도매업, 주류소매업,
상인 간주 부적합	다단계 방문판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법무·회계 및 세무, 지주회사,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수의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교육서비스업, 모건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생계형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상품권 사용고객이 물품 등을 구매한 후 환급 요청을 할 경우 판매 가맹점이 그 요청에 응하여야할 사용금액의 비율

- '09년 온누리상품권사업 도입시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상품권의 잔액반환) 규정을 참고하여 환급요청에 응하여야할 범위를 권면금액의 60%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에 따름(규제대안 없음)

#### ④ 변칙유통 가맹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대상은 법률 규정에 따라 개별가맹점(상인)과 환전대행가맹점(상인조직)로 규정
- 부과사유 및 과태료 부과금액(법규정 최대 2,000만원)은
  - 개별가맹점의 경우 법 규정에 따라 준수사항(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였거나 실제 판매한 상품금액 이상을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 불가) 위반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2,000만원으로 규정
  - 환전대행가맹점의 경우 개별가맹 상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한 경우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가맹상인이 아닌 자와 결탁하여 환전을 대행한 경우에는 첫회 부과금액을 증액하여 1회 1,0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2,000만원으로 규정(규제대안 없음)

## 2-2. 비용·편익 분석

- (비용) '09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 위탁사업 등 시장경영진흥원의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있던 기준을 법제화 하는 것으로 추가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 (편익) 온누리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건전하게 취급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을 증대하고, 시행세칙으로 규정하고 있던 기준을 행정입법화 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사용 고객 및 취급 상인들에 대한 예측성 부여

###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과태료 부과 관련)

#### ○ 중소기업 관련 규제 여부 확인

-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경우 '시장 등'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관련 규제에 해당함
- 피규제대상기업의 업종 :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업종 (가맹 제한업종 제외)
  - \*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 :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중 도박·투기조장 우려가 있는 업종, 사치·향락업종, 국민보건에 반하는 업종, 그 밖에 전통시장 상인이라고 보기에 부적합한 업종을 포준산업분류기준을 토대로 41개 업종 지정 (시행령 개정안 <별표 1> 참조)

#### ○ 전통시장 일반 현황

- 전통시장 1,347곳, 점포 19.5만개, 상인 33만명
- 연도별 매출 및 시장수

(단위 : 조원, 개)

구 분		'06년	'08년	'10년	'12년
전통시장	매출액	24.9	22.3	21.4	20.1
	시장수	1,293	1,247	1,283	1,347

\* 시장경영진흥원 실태조사 자료 참조(2012년도)

#### ○ 규제부담비율(대상 : 소상공인)

- 규제비용은 '12년 변칙유통으로 가맹취소된 개별가맹점 67개이며,
- 동 점포 전체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개별가맹점 1회 위반시 부과)을 부과한다고 가정하여도 수혜 점포 전체(16.8만개) 가맹점수로 환산할 경우 연 평균 부담액은 2,030원으로 미미한 수준

\* 2013.10월 기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수 : 16.8만개

- 또한 온누리상품권 변칙유통을 통하여 500만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1억원(상품권방 등에서 액면금액의 5% 할인하여 현금화 하고 있는 상황 고려) 이상을 변칙유통 환전하여야 하나,
- 점포당 연간 상품권 환전금액이 2.5백만원\*이고,
- 3천만원 이상인 고액 환전자의 경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취급은행 통합 환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변칙유통을 통해 과태료 수준의 부당수익을 얻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과태료 부과대상이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됨

\* '12년도 상품권 판매액 4,257억원, 가맹점포 16.8천개 기준

○ 피규제기업 의견 청취 내용

- 개정안에 대한 전자공청회('13.9.11~10.23, 국민신문고) 및 행정예고('13.9.11~10.21) 결과 이견 없음

○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집행 : 해당 없음

○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부담 완화 방안 : 해당 없음

- 개별가맹점이 연간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규제비용은 2,030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 적발시 개별가맹점에 부과되는 과태료 대비 변칙유통을 통한 수익이 적어 실제 과태료 부과대상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 (3) 규제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

#### 3-1. 규제의 적정성

### ① 은누리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

-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상품권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고,
  - 권면금액은 대금을 일괄 결제하는 대형마트 등과 달리 전통시장은 점포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대금 결제가 개별 점포별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 발행액의 대부분(96%)를 차지하고 있는 종이상품권은 5,000원권·1만원권으로 하고,
  - 최근 발행을 시작한 선불전자지급수단(정액카드, 충전식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은 5만원권·10만원권과 권면금액이 없는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도 발행토록 하여 소액결제 및 고액결제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걱정
- \* 상품권 종류별 발행현황('13년 기준) : 종이 95.7%(4,000억원), 전자 4.3%(178억원)

### ②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 전통시장은 고객과 상인간 상품 및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제2조 전통시장의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통시장 특별법 적용대상 지역(시장등,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 가맹 대상업종을 도·소매업, 용역업을 기본으로 하고,
-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지원 제한업종을 토대로 도박·투기조장 우려가 있는 업종, 국민보건에 반하는 업종, 사치·향락업종, 그 밖에 전통시장 상인이라고 보기에 부적합한 업종을 포준산업분류기준을 토대로 41개 업종을 <별표 1>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걱정

### ③ 상품권 사용고객이 물품 등을 구매한 후 환급 요청을 할 경우

판매 가맹점이 그 요청에 응하여야할 사용금액의 비율

-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상품권의 잔액반환) 규정을 참고하여 환급요청에 응하여야할 범위를 권면금액의 60%이상 구매로 규정하였으며,
- 현행 상품권사업 운영규정인 시장경영진흥원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지원 세부 운영세칙'에도 환급 범위를 권면금액의 60% 이상 구매로 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규제수준 적정

#### ④ 변칙유통 가맹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대상은 법률 규정에 따라 개별가맹점(상인)과 환전 대행가맹점(상인조직)로 규정
- 부과사유 및 과태료 부과금액(법규정 최대 2,000만원)은
  - 개별가맹점의 경우 법 규정에 따라 준수사항(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였거나 실제 판매한 상품금액 이상을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 불가) 위반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2,000만원으로 규정
  -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을 인지하고 환전 대행한 경우와 상인이 아닌 자의 환전을 대행한 경우로 구분하고,
  - 준수사항 위반 개별가맹점의 환전을 대행한 경우 상기와 동일하게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가맹상인이 아닌 자에 대한 환전의 경우 차등을 두어 첫 회 부과금액을 1,000만원으로, 2회 1,500만원, 3회 2,000만원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규제수준 적정

### 3-2. 이해관계자 협의

- 개정안에 대한 전자공청회('13.9.11~10.23, 국민신문고) 및 행정예고('13.9.11~10.21) 결과 이견이 없었음.

### 3-3. 규제 의 실효성

- 온누리상품권의 권종, 권면금액,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상품권 사용 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과 가맹상인, 상인조직의 변칙유통 및 환전에 대한 제재기준을 법 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상품권 사용고객과 취급상인의 예측성 부여
-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업 도입 취지에 따라 전통시장 판로촉진에 기여